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2. 9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1. 17.

다. 상정일자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12.9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감사담당관 김광현】

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「지방자치법」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,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령 하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방자치법」 근거 조항 변경 (안 제1조, 제2조)
- 2) 감사청구 연서 주민연령 하한 완화 (안 제2조)

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「지방자치법」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, 연대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령 하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사항에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라”로 하고, 제2조 사항에 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“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에 따른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, “19세 이상”을 “18세 이상”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
- 2022. 1. 13. 시행되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<sup>1)</sup>에서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이 법에 따라 연대 서명 연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--

1) **지방자치법 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18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명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